

분할조서 의결 공고

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**2주** 이내에 **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**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 번호 : 예천군 공고 - 135호
2. 공고 기간 : 2015. 2. 17. ~ 2015. 3. 3.
3. 공고 내용 : 분할조서 의결 공고

토 지 표 시							공 유 토 지 분 할 신 청 인			비 고
시·군·구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분할 필지 후 수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
예천	감천	포리	385-8	대	435	2	예천농업 협동조합	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22-220	
							안 옥 자	1945.03.04	예천군 감천면 포리	

2015년 2월 17일

예 천 군 수

